

광주지방법원 2020. 6. 23 선고 2020가단88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 1. A

2. B

3. C

피고 광주광역시 서구

소송대리인 D

변론 종결 2020. 5. 26.

판결 선고 2020. 6. 23.

주 문

1. 피고는,

가. 원고 A에게 88,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. 23.부터 2020. 6. 2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원고 C에게 88,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. 23.부터 2020. 6. 2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,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, 원고 A에게 30,730,778원, 원고 B에게 8,147,700원, 원고 C에게 22,583,0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A, C은 1978. 10. 6. 별지1.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지분 1/2씩을 취득하였고, 원고 C의 소유지분 1/2 전부는 2014. 12. 2. 원고 B에게 이전되었다.

나. 원고 A, C은 1978. 8. 16. 별지1. 부동산의 표시 제2,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지분 1/2씩을 취득하였다.

다. 한편 피고는 별다른 권원 없이 2015. 1. 1.부터 현재까지 별지1.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, 관리해 오고 있고, 그 기간별 차임 상당액은 별지 표 기간별 임료 제3항 임료(원)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당사자 주장의 요지

1) 원고들 피고는 별다른 권원 없이 2015. 1.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고들 소유인 별지1.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·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있고, 2015. 1. 1.부터 2019. 12. 31.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은 별지 표 기간별 임료 제3항 임료(원) 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바,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취득한 부당이득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 별지1. 부동산의 표시 제1, 2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피고가 이를 점유,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당초 소유자인 원고들이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,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판단

1) 별지1. 부동산의 표시 제1, 2항 기재 각 토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, 피고가 이 부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를 점유·사용하고 있다는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별지1.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토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,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2015. 1. 1.부터 2019. 12. 31.까지 이 부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·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임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고, 위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 A, C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,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별지1.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토지의 점유·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, 원고 A,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88,203원, 원고 C에게 88,2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. 1. 23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. 6. 2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 A, C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, C의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찬우

별지